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3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4. 10.
- 회 부 일 : 2026. 4. 10.

2. 제안이유

- 현 위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 기간 중 보여준 안정적인 관리능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금산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8조, 제19조

[필요성]

-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 기간 중 보여준 안정적인 관리능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위탁 사무내용: 금산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조직현황
금산시니어클럽 (시설장 박미옥)	금산읍 금산로 1516,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기관장) : 1명 · 종사자 : 상근 5명 · 전담인력 : 기간제 7명

○ 재계약기간: 2026. 9. 15. ~ 2031. 9. 14.(5년간)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지원(※참여자 수 및 연도별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총소요예산: (연간 ※2026년) 3,918백만원

- 산출근거

① 운영비 : 411백만원(도 30%, 군 70%)

② 사업비 : 3,507백만원(국 50%, 도 15%, 군 35%)

- 참여자 747명(공익활동 470명, 역량활용 170명, 공동체사업단 100명, 전담인력 7명)

(공익활동) 470명 × 3,370,000원 = 1,584백만원

(역량활용) 170명 × 8,464,000원 = 1,439백만원

(공동체사업단) 100명 × 2,670,000원 = 267백만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금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갱신,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생계 및 사회참여와 직결된 사업 특성상, 운영 주체의 잦은 교체보다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명시된 ‘성과 평가 결과 반영’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탁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수치가 누락 되어 있어, 집행부의 “타당하다”는 포괄적 결론에만 의존할 경우,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제약되어 자칫 동의절차가 요식 행위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재계약은 재위탁과는 달리 경쟁이 배제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선행해야 하며, 만약 운영 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할 경우, 공개모집 전환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